

화학기술개발연구소 규정

제 1조 (명칭)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부설 화학기술개발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.)라 칭한다.

제 2조 (목적) 본 연구소는 새로운 첨단재료의 개발과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공정개발연구에 기본적인 목적을 두어 학교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.

제 3조 (소재지)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내에 둔다.

제 4조 (사업) 본 연구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
1. 외부로부터 위촉된 연구과제의 수행
2. 연구관련 간행물들의 수집 및 발간
3. 관련분야 국내외 전문가와 협력업체의 연구 강연회
4.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들

제 5조 (구성)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(개정 2015.09.01)

1. 소 장 : 1명
2. 운영위원 : 교내외의 관련분야 교수와 협력회사 연구원 약간 명
3. 연구위원 : 교내외의 관련분야 교수와 협력회사 연구원 약간 명
4. 사무요원 : 약간 명

제 6조 (위촉) 본 연구소의 소장은 총장이 위촉하고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15.09.01)

제 7조 (소장의 임무)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발전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
제 8조 (운영위원회) 본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9조 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.(개정 2015.09.01)

1. 교외수탁연구비 및 수탁연구비의 간접경비
2. 산업체의 연구개발 출연금
3. 각종 연구비와 기타 수입누적금
4.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

제10조 (회계연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11조 (폐소) 본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 (신설 2015.09.01)

제12조 (보고)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 (신설 2015.09.01)

1.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(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)
2. 매 회계연도 결산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3.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-1월말까지
4.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

제13조 (준용)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(신설 2015.09.01)

제14조 (운영세칙)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(신설 2015.09.01)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